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'98. 4. 28

기획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'98. 4. 16

○ 회부일자 : '98. 4. 16

다. 상정일자 : 제1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('98. 4. 28)

2. 제안설명 요지

(공업경제국장 : 박 환 규)

가. 제안이유

-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('98. 2. 20)되면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, 노동쟁의 행위의 중지명령 등에 관한 사항이 시도의 사무로 이관됨에 따라, 이들 사무를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시장·군수·출장소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다음 사무를 시장·군수·출장소장에게 위임

(단, 2개시군 이상에 걸친 노동조합은 제외)

- 노동조합 설립, 변경, 해산신고 수리 및 신고증 교부
- 노동조합 규약 및 결의, 처분의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
- 단체협약의 신고수리 및 시정명령
- 노동쟁의 행위의 중지명령 및 폭력행위 등의 신고수리
-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등

※'97.3.1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따라 국가(노동부)로 환수되었다가 다시 시도로 이관된 사무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김 태 인)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으로 노동관계 사무 중 일부가 시·도로 이관되어짐에 이를 시장·군수·출장소장에게 재위임 하려는 것이며

주요골자에 있어서는

- 첫째, 노동조합의 설립, 변경, 해산신고 수리 및 신고증 교부
- 둘째, 노동조합 규약 및 결의·처분의 시정명령
- 셋째, 단체협약의 신고수리 및 시정명령

넷째, 쟁의행위의 중지명령

다섯째, 폭력행위 등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등으로 이의 사무중 시장·군수·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참석 5명, 찬성 5명)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불임서류

-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
- 신·구조문 대비표